

서울특별시의회  
청소년 마음건강  
특별위원회 보고자료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

# 주요 업무 보고

---



2023. 8.

서울특별시교육청

# 다양성이 꽃피는 공존의 혁신미래교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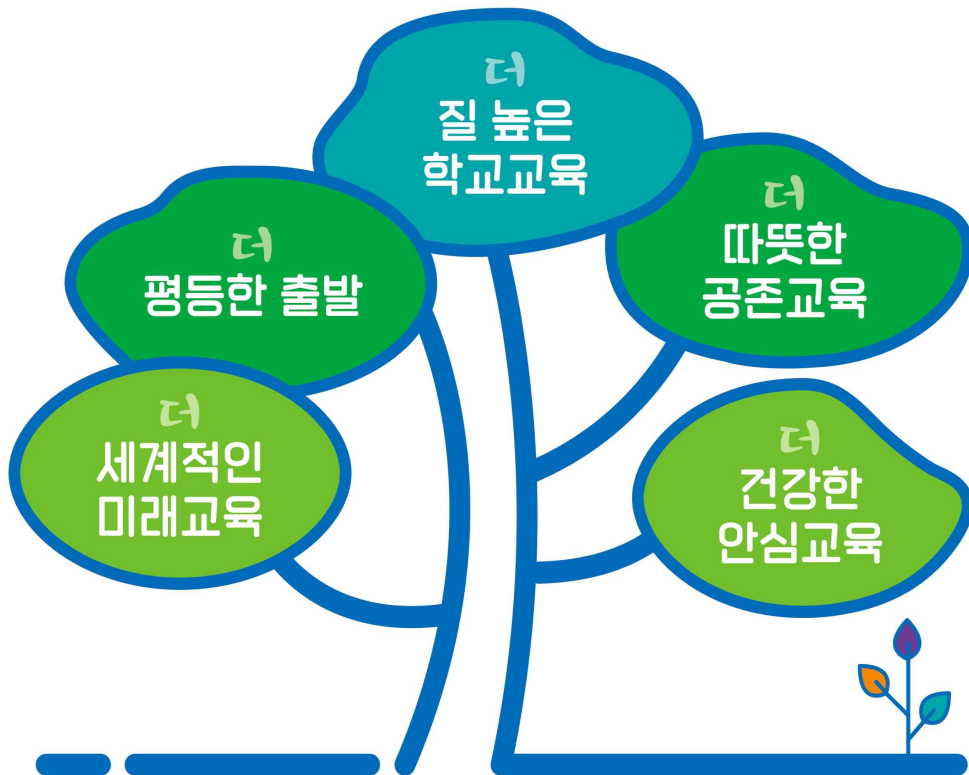
교육 지표

생각이 자라는 교실

함께 성장하는 학교

미래를 여는 교육

정책 방향



---

## 일반 현황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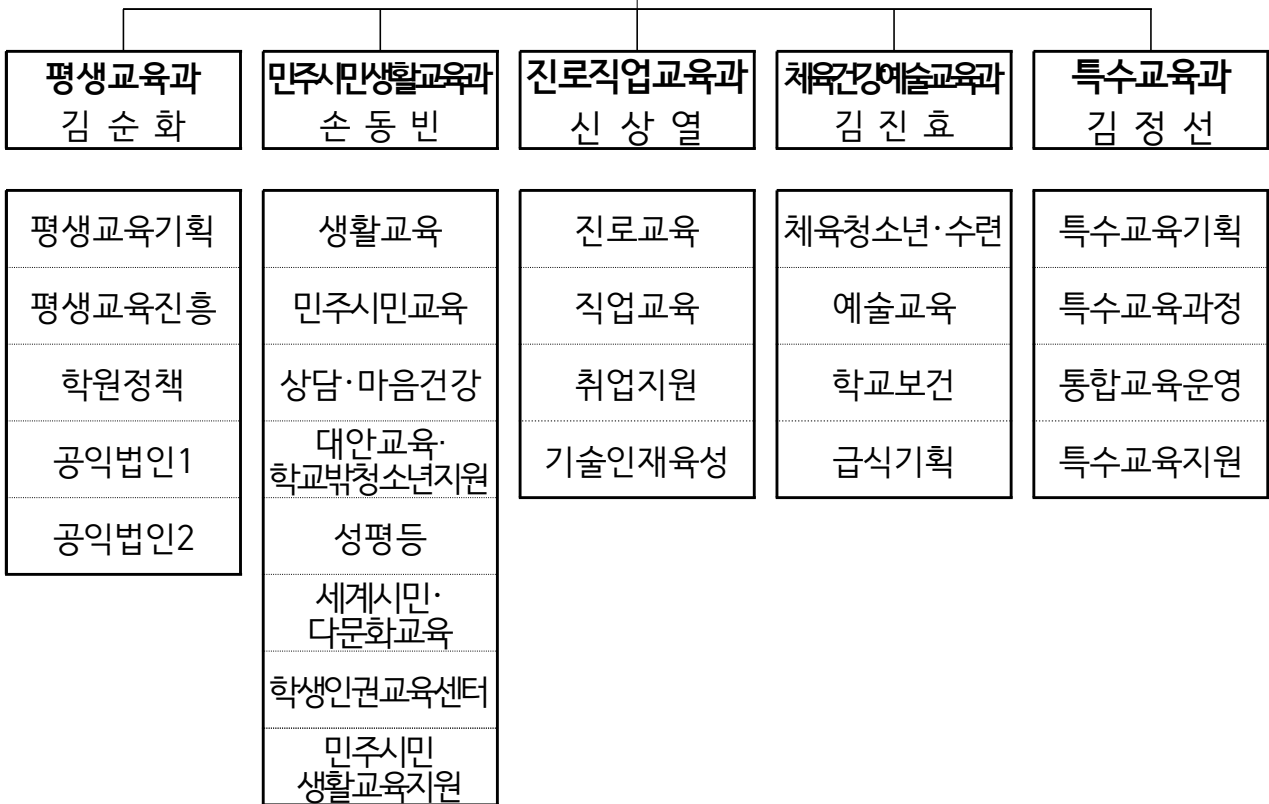


# 일반 현황

## □ 조 직

5과 25담당

### 평생진로교육국 구 자 희



## □ 정·현원

(’23.8.1.기준)

구분	일 반 직								교육전문직				합계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소계	유아	초등	중등	소계	
정원	-	3	10	30	44	9	-	96	1	20	47	68	164
현원	-	3	10	29	34	16	1	93	1	24	43	68	161

## □ 주요 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평 생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및 학력인정 문해교육 업무 지원</li> <li>○ 장애성인 및 학교평생교육 지원</li> <li>○ 초·중·고졸 검정고시 운영</li> <li>○ 도서관·평생학습관 발전지원</li> <li>○ 퇴직교직원 사회공헌 봉사활동 지원</li> <li>○ 학원 지도·감독 계획 수립 및 운영 지원</li> <li>○ 비영리(공익)법인 설립 및 운영 지원</li> </ul>
민 주 시 민 생 활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li> <li>○ 학교민주시민교육, 학생자치 및 통일교육 지원</li> <li>○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li> <li>○ 대안교육 지원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li> <li>○ 성차별·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li> <li>○ 세계시민교육 활성화 및 다문화·탈북학생 지원</li> <li>○ 학생(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li> <li>○ 학생 봉사활동 운영 지원</li> </ul>
진 로 직 업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초·중·고 단위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지원</li> <li>○ 산업수요에 적합한 특성화고 및 마이스터고 운영 지원</li> <li>○ 일반고 직업교육 운영</li> <li>○ 특성화고 취업기능강화 사업 운영</li> </ul>
체 육 건 강 예 술 교 육 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교체육 및 생존수영교육 관련 업무</li> <li>○ 학교예술교육 업무</li> <li>○ 학교보건 및 환경위생관리 업무</li> <li>○ 학교(유치원 포함) 급식 지원</li> </ul>
특수교육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특수교육 운영 기획 및 특수교육지원센터 업무</li> <li>○ 특수교육 교육과정 운영 및 진로·직업교육 업무</li> <li>○ 현장중심 통합교육 활성화 지원 및 장애공감문화 조성</li> <li>○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및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업무</li> </ul>



## 예산 현황

### 2023년 사업별 예산 현황

(단위: 천원, %, '23.8.1.기준)

부서	세부사업	2023년도		2022년도	집행액(C)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C/B)
		본예산(A)	예산현액(B)	최종예산		
민주 시민 생활 교육과	학생생활지도지원	670,040	1,068,154	1,903,633	733,751	68.7
	성폭력예방교육등	436,267	734,567	801,733	518,769	70.6
	학교폭력예방및교육	7,694,074	9,970,206	8,013,402	6,412,645	64.3
	학생상담활동	2,615,882	2,854,082	5,804,168	2,246,469	78.7
	대안교육운영	9,302,466	16,929,288	10,334,788	11,811,204	69.8
	다문화및북한이탈 주민등자녀교육지원	7,847,473	8,111,797	7,597,107	6,952,503	85.7
	학교보건관리	1,055,238	1,151,638	499,910	700,990	60.9
소계	29,621,440	40,819,732	34,954,741	29,376,331	72.0	

### 2023년 과제별 예산 내역

(단위: 천원, %, '23.8.1.기준)

번호	과제명	2023 예산			2022 최종예산	집행액(B)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B/A)	쪽수
		본예산	특교 등	계(A)				
1	학교폭력 예방 및 관계가꿈의 학교문화 조성	1,221,720	434,952	1,656,672	969,250	836,506	50.5	
2	학교민주시민교육 및 학생자치역량 강화	583,870	404,215	988,085	602,170	649,690	65.8	
3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4,516,650	1,571,240	6,087,890	7,188,046	5,431,954	89.2	
4	중단 없는 배움을 지원하는 종합지원체계 구축	8,661,466	7,626,822	16,288,288	9,494,788	11,205,649	68.8	
5	성차별·성폭력 없는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865,407	298,300	1,137,507	1,141,841	857,555	75.4	
6	공존과 상생의 세계시민교육 강화	7,906,183	264,324	8,170,507	7,765,817	7,000,803	85.7	
7	인권존중 학교 문화 조성	-	-	-	618,325	-	-	
합계		23,755,296	10,599,853	34,328,949	27,780,239	25,982,157	75.7	

---

# 학생 마음건강 통합지원

---

작성 자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손동빈 ☎9476 상담·마음건강팀장: 신선호 ☎9016

담당: 송영숙 ☎9537, 임운대 ☎9061  
정서미 ☎9733, 김유진 ☎9017



## 학생 마음건강 통합 지원

### □ 사업 개요

#### ○ 목적

- 마음건강 위기학생 예방, 조기발견, 지원을 위한 통합시스템 구축
- 단위학교-교육(지원)청-지역사회와의 연계·협업 내실화를 통한 서울학생 마음건강 증진 도모

#### ○ 근거

-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규정(교육부훈령제329호)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22.7.7.개정)
- 「학교보건법」

#### ○ 주요 내용

- 단위학교 위(Wee) 클래스 상담 활성화 지원 및 위(Wee) 센터 운영
-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 사업 및 마음건강 증진 지원 사업 운영

### □ 추진 목표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물량
단위학교 상담지원	연중	위(Wee) 클래스 36교 구축·리모델링 지원 위(Wee)클래스 운영 컨설팅, 상담자료 개발·보급
학생상담센터운영	연중	위(Wee) 센터 26개소 운영 (직영 24개, 위탁 2개-꿈세움, 위드위)
학생자살예방 (생명존중교육)사업 운영	연중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 문화 조성(전체 초·중고 대상) 역량 강화 연수 운영(초·중고 교원 및 보호자 대상)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사업 운영
학생정서행동특성 검사운영	연중	정서행동특성검사 운영(초1·4학년, 중1, 고1 학생)
마음건강ONE-STOP 지원센터 운영	'23.3~12월	상담(개인/집단상담(내방, 출장), 전화상담 등): 약370명



## □ 추진 계획

### 2023년 주요 개선 사항

- 위(Wee) 센터 예산 재원배분으로 운영 내실화 및 자율성·책임성 강화
  - 모든 지역 위(Wee) 센터의 위기·교육특화화로 단위 학교 지원 강화
  -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 구축으로 상담 활성화
  - 학생 심리정서지원 강화를 위한 Wee자문단 신규 운영 및 관리자 연수 실시
  - 위(Wee) 클래스 지원 강화를 위한 운영비 및 구축·리모델링비 증액
  - 학생자살예방 및 생명존중교육 지원 강화
    -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마음건강 증진 강화
    - 위기학생 치료지원 강화, 생명존중 인식개선 내실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에 대한 2차 연계율 향상
  -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 수요자 맞춤형 상담 확대(내방, 출장, 비대면 등)
  - 마음건강 고위기학생 상담·치유 및 치료비 지원 강화
- 
- 상담 접근성 제고를 위한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 구축
    - Wee-Network 정보 상시 제공 및 연계를 통한 위기학생 지원 강화
    - 지역Wee센터 상담신청을 위한 예약시스템 운영으로 위클래스 지원 강화
    - 대상별상황별 쉽게 활용 가능한 자료동영상 아카이브(Archive) 구축 및 제공
    - 익명성이 보다 보장된 메타버스 심리상담 운영 등 블렌디드 상담 활성화

#### 서울 위플(Weepl)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 중인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위(Wee) 프로젝트 통합플랫폼. 상담예약시스템, 심리검사, 심리정서 자료·동영상 아카이브, Wee-Network 정보 상시 제공·연계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함. 특히, “플(pl)”은 즐기기(play), 성장(plus), 정거장(platform)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며 학생들이 상담을 즐기고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메타버스 심리상담

심리상담 전용 메타버스 프로그램인 ‘메타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대면상담을 주저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가상공간에서 실시간 표정인식이 가능한 아바타로 상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

- 위(Wee) 센터 운영 내실화 및 단위학교 위(Wee) 클래스 지원 강화
  - 예산을 재원배분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역의 수요 충족 및 맞춤형 지원 유도
  - 모든 지역Wee센터의 위기·교육특화화로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협력 강화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를 위한 상담활동 지원 확대(내방, 출장, 비대면 등)
- 위(Wee) 클래스 구축·운영 지속 지원 및 교육 자료 개발·보급
  - 위클래스 구축 36교(교당 3천만원), 운영비 전체학교 교당 250만원 지원
  - 현직 전문상담교사 위촉 “Wee자문단” 구성 및 단위학교 상담활동 지원
  - 전문상담(교)사 운영 및 학교상담활동 이해 등을 위한 학교 관리자 연수 신설
  - 심리회복·마음돌봄 프로그램 및 학교급별 학생 상담 등을 위한 자료 개발
-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사업 추진
  -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시범사업 운영
  - 학생 마음건강 지원단 운영으로 위기학생 심리회복 지원

※ (교육지원청)위기학생상담지원단 운영, (본청)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운영

**(본청)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학생, 교원, 보호자, 학급을 네 개의 클로버 잎사귀로 표현함. 마음건강 전문가(전공 과목 박사급 이상의 임상심리 전문인력)가 학교를 찾아가 자살시도 등 위기학생을 통합지원하는 과정에서 교육공동체가 안정을 찾고, 서로의 성장을 돕는 행운의 네잎클로버가 되어준다는 뜻을 담고 있음

  - 교원 및 보호자 대상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 역량 강화 연수 내실화 및 교원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양성 확대
  -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학생자살예방 강화
    -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국가트라우마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등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 초 1·4학년, 중·고 1학년(특수·각종학교 포함) 대상 실시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결과 관심군 학생을 대상으로 전문기관 2차 연계 실시 및 지원
-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운영
  - 마음건강 전문가의 학교 방문 상담 지원으로 학생마음건강 증진 도모

-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 운영
  - 맞춤형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 전문의 컨설팅 상담 등
- 마음건강 고위기학생 상담·치유 및 치료비 지원
  - 자살(자해)시도 학생 상담·치료비 지원
  - 단위학교 위기학생 상담·치료비 지원
  - 마음건강 전문의\* 연계 및 상담·치료 지원
    - \* 대한소아청소년정신건강의학회 소속 23개 자치구 내 병·의원 전문의

## □ 추진 실적

- 학생 심리·정서 상담활동 지원
  - 위(Wee) 프로젝트 운영 계획(Wee센터/Wee클래스) 수립 및 안내: '23.1~2월
  - 위(Wee) 센터 연계 상담·치료기관 지정 및 자문의 위촉: '23.3월
    - ※ 상담·치료기관 (22년)192개소→(23년)218개소 ※ 자문의 (22년)32명→(23년)38명
  - 위(Wee) 센터 메타버스 심리상담 시범사업 평가에 따른 전면 시행: '23.4월
  - 위(Wee) 클래스 구축비 지원 학교 선정 및 예산 교부(36교): '23.5월
  - Wee 자문단(현직 상담교사) 구성 및 교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시작: '23.5월
    - ※ 학교 수요조사로 교육 주제 선정, 매월 1회 유튜브 생중계 교육 실시(5.24./6.21./7.26.)
  - 위(Wee) 클래스 점검(1,066교) 및 컨설팅 실시: '23.6~8월
  -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서울 위플) 구축 용역 체결: '23.6월
  - 지역사회 유관기관 협력 강화를 위한 Wee-Network 전문가 회의: '23.6월
    - ※ 서울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가족센터 사업 상호 공유 및 협력 방안 논의
  - 위(Wee) 센터 메타버스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23.7월
-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 사업 추진
  -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계획 수립 및 안내: '23.2월
  - (교육지원청)위기학생상담지원단 구성 및 운영: '23.3월~
  - 마음건강 회복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학급 단위 숙박야영 프로그램『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캠프 운영: 4월(4기), 5월(2기)(학생교육원 연계)

- (본청)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구성 및 운영: '23.7월~
  - ※ 자살시도, 심각한 자해 등 심리정서고위기학생, 보호자, 교원, 학급 등 위기 지원
  - ※ 중대사안 다수 발생교, 저경력 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연수 운영
-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시범사업 학교 선정(초·중·고 각 1교): '23.7월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마음건강 교육자료 공동 개발 완료: '23.7월
  - ※ 만화형식의 학생용 교재 <멋쟁이 메이와 친구들>, 워크북 및 교사용 가이드북 개발 완료

○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운영

-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계획 수립: '23.1월
-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위탁용역 계약 체결: '23.4월
-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운영 시작: '23.5월
  - ※ 2023.7.31.기준 학생 126명(초중고 70교) 상담 지원 완료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연계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추진 계획 수립, 담당교사 연수: '23.3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23.4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전문기관 연계 조치: '23.5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1차 검사 결과 제출: '23.6월

○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 운영

-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 운영 계획 수립: '22.3월
-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 전문상담사 상담서비스 운영 시작: '22.4월
-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요원 협의회: '23.4월
  - ※ '23.7.31.기준 학생 230명, 926회 지원(맞춤형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 전문의 컨설팅)

○ 마음건강 고위기학생 상담·치유 및 치료비 지원

- 마음건강 치료비 지원 통합 계획 수립: '23.3월
- 자살시도(자해) 학생 상담·치료비지원: '23.4월~
  - ※ 11개 지원청 수요조사에 따른 247,000천원 재배정 완료

- 단위학교 위기학생 상담·치료비(특교) 지원: '23.5월~
  - ※ 공립 신청교 434교 679,000천원(교당 100만원~300만원) 교부 완료
- 마음건강 전문의 연계 상담·치료비 지원: '23.6월~
  - ※ 전문의 연계 신청 학생 68명, 7건 치료비 청구 (2023.7.31.기준)

## □ 향후 추진 일정

### ○ 학생 심리·정서 상담활동 지원

- 위(Wee) 센터 메타버스 심리상담(초등4학년~고등3학년): '23.4~12월
- Wee자문단(현직 상담교사)의 교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23.5~11월
-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서울 위플) 구축: '23.6~12월
- 심리정서 회복탄력성을 위한 긍정심리 실천 동영상 배포: '23.8월
- 위(Wee) 클래스 점검 및 컨설팅 결과 수합: '23.8월
- 초등 생명존중교육(라이프히어로즈) 및 사후안정화교육 매뉴얼 개발: '23.8~12월
- 단위학교 관리자 상담업무 이해 연수 실시(초·중등 구분): '23.9~10월
- 위(Wee) 센터의 심리정서 위기학생 및 단위학교 상담활동 지원: 연중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교)사 전문성 신장 연수: 연중
-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운영을 위한 심리교육·상담활동 자료 배포: 연중

### ○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사업 추진

-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사업 추진: '23.3~12월
  - ※ 각 교육지원청 단위 담당 교원, 보호자 역량 강화 연수 및 단위학교 계획 지속 운영
  - ※ (학생교육원 연계)마음건강 회복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학급 단위 숙박야영 프로그램 『우리들의 행복한 시간 만들기』 캠프 운영: 하반기 6기(1박2일)
-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시범학교 담당자 워크숍 및 프로그램 운영: '23.8~11월

- 청소년 자살예방 시리즈 영상 2편(CBS 씨리얼 협업) 보급: '23.8월
-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연수 추진: '23.9~10월
  - ※ 교원연수: 국립정신건강센터 전문의 및 교육부 강사요원(게이트키퍼) 활용
  - ※ 보호자연수: 교육부 모바일청소년상담센터와 협업하여 비대면 연수 운영 예정
- 위기학생상담지원단 및 네잇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운영: ~'23.12월
-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운영: '23.5~12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실시 및 연계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 전문기관 연계 조치: '23.5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연계 전문기관 협의회 개최: '23.10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조치 결과 보고: '23.11월
  -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지역 정신건강증진 협의회 개최: '23.12월
-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 운영: '23.4~12월
  -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 운영을 위한 전문상담요원 평가회: '23.12월
- 마음건강 고위기학생 상담·치유 및 치료비 지원
  - 자살시도(자해) 학생 상담·치료 지원: '23.4~12월
  - 단위학교 대상 위기학생 상담·치료비(특교) 지원: '23.5~12월
  - 마음건강 전문의 연계 상담·치료비 지원: '23.6~12월

## □ 예산 집행 현황

(단위: 천원, %, '23.8.1.기준)

사업명	'23 예산			'22 최종예산	집행액 및 집행률	
	본예산	특교 등	계		원인행위액 (집행률)	지출액 (집행률)
단위학교상담지원	1,222,800	-	1,222,800	3,213,000	1,222,800 (100)	1,222,800 (100)
학생상담센터운영	1,313,148	-	1,313,148	1,059,488	1,193,223 (90.9)	1,193,223 (90.9)
학생상담내실화지원	244,200	-	244,200	204,450	162,500 (66.5)	162,500 (66.5)
학교폭력피가해학생교 육치유지원	992,700	-	992,700	992,700	935,700 (94.3)	935,700 (94.3)
학교안전망구축 (자살예방생명존중)	117,704	226,240	343,944	462,652	295,954 (86.0)	295,954 (86.0)
정신건강전문가 학교방문지원	-	565,000	565,000	575,000	551,046 (97.5)	449,532 (79.6)
학생정서행동 특성검사운영	23,708	-	23,708	22,176	15,035 (63.4)	15,035 (63.4)
학생 정신건강 담당교사 연수	13,400	-	13,400	13,400	10,250 (76.5)	10,250 (76.5)
정신건강교육원격 직무연수	18,200	-	18,200	15,160	600 (3.3)	600 (3.3)
마음건강ONE-STOP 지원센터운영	99,040	-	99,040	127,950	71,200 (71.9)	71,200 (71.9)
학생치료비	450,000	780,000	1,230,000	450,000	952,516 (77.4)	952,516 (77.4)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 애학생 지원사업	21,750	-	21,750	52,070	21,130 (97.1)	1,750 (8.0)
<b>합계</b>	<b>4,516,650</b>	<b>1,571,240</b>	<b>6,087,890</b>	<b>7,188,046</b>	<b>5,431,954 (89.2)</b>	<b>5,311,060 (87.2)</b>

---

## 학생 마음건강 주요업무

---



# 1

## 종합적인 상담 및 치유 지원

### □ 사업 개요

#### ○ 추진근거

- 교육부 훈령 제329호 「위(Wee) 프로젝트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 2023 서울교육 주요업무(정책안전기획관-55, 2023. 1. 2.)

#### ○ 주요 현황

- 학교(Wee클래스)-교육(지원)청(Wee센터)-지역사회의 종합적 다중 안전망 협력체계 구축
  - Wee클래스 구축리모델링(36교, 3천만원) 및 Wee클래스 운영비(전체 학교, 250만원) 지원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대규모학교 등 단위학교 밀착지원을 위한 26개 Wee센터 운영
  - 학교폭력 피해학생 심리정서 상담 및 치료 강화를 위한 전담특화 Wee센터 3개소 운영
  - Wee센터 연계 상담·치료기관(218개), 자문의(38명) 지정·위촉 및 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 종합적 다중 안전망 협력체계 주요 통계(2023.8.1.기준)

#### ① 위클래스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 현황 [각종·대안학교 포함, 특수학교 및 휴교 제외]

학교급	총학교수	위클래스		전문상담(교)사			
		구축수	구축률	전문상담교사	전문상담사	계	배치율
초	607	331	54.5%	198	147	345	56.8%
중	396	385	97.2%	218	162	380	95.9%
고	331	293	88.5%	209	59	268	80.9%
합계	1,334	1,009	75.6%	625	368	993	74.4%

※ 특수학교 28교 중, 위클래스 구축 및 전문상담교사(정원외 기간제) 배치교: 1교(서울정애학교)

## ② 위(Wee) 센터 운영 현황

소속청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본청	합계
센터	동대문 중랑	서대문 마포 은평 영등포 영등포 금천 꿈세움	영등포 금천 꿈세움	도봉 노원	중부 종로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서울통합 위드위	26
계	2	3	3	2	2	2	2	2	2	2	2	2	

## ③ 2023년도 상담·치료기관 지정 및 자문의 위촉 현황

구분	동부	서부	남부	북부	중부	강동 송파	강서 양천	강남 서초	동작 관악	성동 광진	성북 강북	합계
치료검사기관	3	7	4	3	4	7	3	2	4	7	5	49
심리상담기관	21	12	13	16	18	16	18	15	8	16	16	169
자문의	2	4	1	3	7	3	2	3	3	7	3	38
계	26	23	18	22	29	26	23	20	15	30	24	256

## □ 주요추진사업

세부사업 1 위기학생의 회복과 적응을 종합 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 활성화 [계속]

〈 Wee프로젝트 상담·치유 연계 〉



- 단위학교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위(Wee) 클래스 운영 및 구축
- 26개 위(Wee) 센터(자치구별 1센터)의 관내 단위학교 밀착지원
  - 전문상담(교)사 미배치교 및 대규모 학교 상담활동 지원 확대(내방, 출장, 비대면 등)
  - 위(Wee) 클래스 컨설팅, 단위학교 위기사안 개입, 사례회의, 특화 프로그램 운영

- 본청-지원청-학교-지역사회의 촘촘한 다중 지원 체계 구축으로 학교 폭력 피해학생 지원
  - 전담기관: 위드위(WithWee) 센터, 특화 위(Wee) 센터: 성동마음이랑, 관악밝음이랑
  - 상담·치료기관 (22년)192개소→(23년)218개소, 자문의 (22년)32명 →(23년)38명
  - 피해학생 1호조치(심리상담 및 조언)는 단위학교 위클래스에서도 함께 지원
- 전문상담(교)사 상담 전문성 신장 연수 내실화, 자료 및 프로그램 제작·배포

**세부사업 2**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서울 위플(Weepl)” 구축 신규

**서울 위플(Weepl)**

서울시교육청이 전국에서 최초로 구축 중인 상담활동 활성화를 위한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상담예약시스템, 심리검사, 심리정서 자료·동영상 아카이브, Wee-Network 정보 상시 제공연계 등을 주요 특징으로 함. 특히, “플(pl)”은 즐기(play), 성장(plus), 정거장(platform)의 의미를 모두 함축하며 학생들이 상담을 즐기고 그로 인해 성장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함

- 목적
  - 26개 위(Wee) 센터, 서울시 및 교육부 유관기관 정보 상시 제공 연계
  - 학생·보호자·교원이 활용 가능한 심리정서 지원 자료의 종합적 체계적 제공
  - 학생·보호자 누구나 쉽게 접근 가능한 지역 위(Wee) 센터 상담 예약시스템 개시
  - 블렌디드 상담 촉진을 통한 위기 수준에 따른 맞춤형 상담 실시 및 추수관리 내실화

구분	위기 수준	지원 방법
1	위기를 겪고 있지 않으며 상담 관련 단순 문의 있음	비대면 자문
2	위기를 겪고 있으나 상담 조력 통해 좋아질 수 있음	비대면/대면 상담
3	위기를 겪고 있으며 안전상 문제로 긴급 개입 필요함	응급 개입 위한 대면 상담 진행

○ **경과**

- 통합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을 위한 TF 운영: 2022.12월~2023.2월
- 정보화사업 보안성 검토 및 메뉴 설계 구체화 작업: 2023.2월~2023.3월
- 통합 플랫폼 구축안 최종 결정, 입찰공고 및 용역업체 선정: 2023.4월~2023.5월
- 2023.12월 개시 예정, 학교 홈페이지에 바로가기 연결 등 활용도 확대 노력 예정

○ **플랫폼 메뉴 구성(안)**

<b>서울 위(Wee)</b>	<b>상담 신청</b>	<b>마음건강 검사</b>	<b>마음건강 정보</b>	<b>Wee-Network</b>
위(Wee) 프로젝트 서울 위(Wee) 센터 공지사항 언론보도 챗봇(FAQ) 서울위플(Weepl) 상징	이용안내 대면상담신청 비대면상담신청 -메타버스상담 -화상상담 -전화상담 -게시판상담	맞춤형 검사 -교우관계/가족관계/정서/우울/조울증/중독/섭식/수면/행동및정서 연령별 검사 상황별 검사	추천글 대인관계 학교생활 정신건강 위기 일탈	소개 위치 공지사항
<b>전문상담(교사) 공간</b>	<b>회원가입</b>	<b>마이페이지</b>	<b>관리자페이지</b>	<b>SNS</b>
학교업무 게시판 상담 전문성 게시판 자료공유방 자유게시판	회원가입 ID/PW 찾기 로그인	개인정보 확인 상담 예약 확인 상담 확인증 발급 상담 만족도 검사 마음건강 검사 결과 확인 전문상담(교사) 소통 공간 확인	회원 관리 시스템 관리 사이트 관리 통계 관리 메시지 관리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세부사업 3** 학생에게 친숙한 매체로 상담 접근성을 높이는 ‘메타버스 심리상담’ 운영 **신규**

**메타버스 심리상담**

심리상담 전용 메타버스 프로그램인 ‘메타포레스트’를 활용하여 대면상담을 주저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생들에게 친숙하고 공간적 제약에서 자유로운 메타버스를 활용하여 상담의 문턱을 낮추고, 가상 공간에서 실시간 표정인식이 가능한 아바타로 상담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함

○ **목적**

- 24개 지역 위(Wee) 센터의 상담접근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상담 확대
- 포스트코로나 및 위기 상황에 대비한 블렌디드 상담 정착 및 활성화
- 학생 맞춤형 상담을 통한 학생 심리정서 안정 및 학교적응력 고취
- 2023.12월 개시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내 비대면 상담 창구 마련

○ 경과

- 23.1~2월 메타버스 심리상담 시범사업 실시(초·중·고 216명 신청, 각 4회기 참여)
- 메타버스 심리상담 시범사업 평가회: 2023. 3. 17.(금)
- 23.4월 메타버스 심리상담 전면 도입 (24개 위센터, 초등 4학년~ 고등 3학년 대상)
- 전문상담(교)사 대상 메타버스 심리상담 전문성 신장 연수 실시 (23.4월, 5~6월)
- 메타버스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한 서울시교육청-(주)야타브엔터 업무협약 체결: 2023. 7. 18.(화)



세부사업 4 Wee-Network를 통한 협업 체제 강화 계속

- 위(Wee) 센터 연계 상담 · 치료기관 공모 · 지정 및 자문의 위촉
  - 심리상담 및 치료 경험이 풍부한 의료기관, 민간 상담기관,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
  - 상담 · 치료기관에 의뢰 및 비용 지원, 3차 안전망을 통한 촘촘한 위기학생 지원
  - 상담 · 치료기관 (22년)192개소→(23년)218개소, 자문의(22년)32명→(23년)38명
- 지역사회 상담 유관기관 협력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정신건강복지센터 · 가족센터 등과 네트워크 구축 및 정례회의 운영

○ Wee-Network 온라인 상담 사업 안내 및 참여

< Wee-Network 온라인 상담 사업 >

- ▶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4시간 청소년 온오프라인상담  
※ 상담전화 1388(모바일: 지역번호+1388), 상담문자 #1388, 홈페이지 www.cyber1388.kr
- ▶ 교육부 상담미씽  
※ 상담미씽 카카오톡 채널 상담,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유튜브, 블로그
- ▶ 교육부 다들어줄게 청소년모바일상담센터 24시간 실시간 상담  
※ 상담문자 1661-5004,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페이스북 메시지
- ▶ 교육부 랜선 위클래스 및 위닥터사업  
※ 랜선 위클래스는 교사-학생 간 화상상담, 위닥터는 전문상담교사·전문상담사와 정신과 전문의를 연결하여 위기 청소년 심리정서 치유 대응 화상자문 지원  
※ 랜선 위클래스(www.lanweeclass.co.kr), 위닥터(www.weedoctor.co.kr)

세부사업 5. 단위학교 상담 및 심리정서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원 연수 신규

- 단위학교 관리자 상담업무 이해 연수 실시
  - 학생의 심리적 특성, 학교상담과 위(Wee) 클래스 운영 방향에 대한 전반적 이해 증진을 통해 상담친화적 문화 형성 지원(23년 9~10월, 초등 및 중등 구분 실시)
- Wee 자문단(현직 상담교사) 운영을 통한 교직원 대상 온라인 교육 실시
  - 교직원의 학생 심리정서 이해 및 위기 대처능력 함양으로 안정적 학교 운영 지원
  - 학교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자문단 회의를 통하여 매달 연수 주제 선정
  - 2023. 5월~11월까지 매월 1회 실시간 연수(유튜브 생중계), 희망 교직원 전원 참여

월	일시	주제
5	2023. 5. 24.(수)	<b>학교생활 부적응, 교우관계</b> 학교생활 부적응에서 학교생활 적응으로 / 관계의 기술, 학급의 집단역학
6	2023. 6. 21.(수)	<b>학교폭력, 분노조절</b> 학교폭력의 숨은 마음 찾기 / 분노조절'장애'에서 분노조절'잘해'로
7	2023. 7. 26.(수)	<b>사회성, 청소년 분노 이해</b> 금쪽이를 부탁해: 사회성편 / 청소년 분노, 그것이 알고싶다

- 심리정서 회복탄력성을 위한 긍정심리 실천 동영상 자료 제작·배포
  - 주제: 내 마음 가꾸기  
(1편: 나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 / 2편: 친절의 씨앗 뿌리기)
  - 내용: 초·중학생 대상으로 생명존중 인식 및 사회성 강화 지원
- ※ 교육연구정보원의 2023년도 수업 및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동영상 콘텐츠 제작 의뢰

연차별 추진목표

세부사업	최종목표	2022.7.~12.	2023	2024	2025	2026.1.~6.
서울 위(Wee) 프로젝트 통합 플랫폼 구축	위기학생 상담 및 자문 확대	-	플랫폼 구축	2023년 대비 5% 증가	2023년 대비 10% 증가	2023년 대비 12.5% 증가
위기학생의 회복과 적응을 종합지원하는 위(Wee) 프로젝트 활성화	위(Wee)클래스 구축률 (90%)	구축율 74%	구축율 78%	구축율 82%	구축율 86%	구축율 90%

## 2

# 학생의 건강한 삶을 돕는 정서행동 발달 지원

### □ 사업 개요

#### ○ 추진 근거

- 학교보건법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 서울특별시교육청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시행'23.5.18.)

#### ○ 추진 배경 및 현황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우울감·불안감 증대, 엔데믹 전환 이후 수면 아래 잠재된 심리정서 문제가 쓰나미처럼 전면화될 가능성 높음  
※ 우울 증가 27%(초), 우울감 중등도 이상 12.2%(중등), 학업스트레스 증가 43.2% [교육부]
- 최근 3년간 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 관심군과 자살군 학생 증가 추세

구분	학교수	검사인원(명)			검사결과	
		검사대상(A)	검사실시(B)	참여율 (B/A)*100	관심군	자살위험
2020	1,318	282,785	280,759	99.3%	12,382(4.41%)	3,075(1.10%)
2021	1,320	268,930	266,823	99.2%	12,117(4.5%)	3,310(1.2%)
2022	1,318	<b>267,074</b>	<b>264,614</b>	<b>99.1%</b>	<b>13,489(5.09%)</b>	<b>3,749(1.42%)</b>

- 자살 학생 중 정상군 학생 비율 증가 추세

※ '19년(9명, 39.1%) → '20년(14명, 63.6%) → '21년(20명, 71.4%)

#### ○ 정책 목표

- 마음건강 위기상황 예방·조기발견 및 위기학생 지원시스템 구축을 통한 학생 마음건강 증진



## □ 세부 추진 사업

### 세부사업 1 교육주체 역량강화를 통한 학생자살 예방 및 위기대응 역량 제고

- ‘생명사랑 789 인증학교’ 도입을 통한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확대 **신규**
  - 서울시자살예방센터의 생명지킴이 교육대상별 교육콘텐츠 이수자 이수증 발급
    - ※ 생명지킴이 S (보호자용) / 생명지킴이 A (학생용) / 생명지킴이 T (교사용)
  - 이수자 목표(보호자 70%, 학생 80%, 교원 90%) 도달한 학교 대상 인증제 도입
- 교육공동체 역량강화 연수를 통한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 **강화**
  - 학생자살예방(생명존중교육)을 위한 학교별 연수\* 강화(의무사항)
    - ※ (학생) 분기별 1회 이상(연간 6시간), (교원) 연간 4시간 이상, (학부모) 연간 1시간 이상
  - 보호자 대상 학생자살예방 리터러시 교육 강화 (추경 예산 31백만원 편성)
    - ※ 자살 원인(전국): 1분기 자살 사망 학생 중 37.0%의 학생이 가족문제(부모-자녀 갈등, 부모 갈등, 가족 정신문제 등)가 가장 많음
  - 교원 역량강화 연수 운영(전체 교원 대상) 및 게이트키퍼(생명지킴이) 강사 요원 양성
    - ※ 2022년 강사요원에 의한 교원 연수 참여 인원: 총 3,755명(상반기 1,707명, 하반기 2,048명) 참여
-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협력사업\*** 지속 운영
  - \*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유니세프한국위원회, 국가트라우마센터, 학생정신건강지원센터 등

### 세부사업 2 서울학생 심리정서 회복탄력성 지원

- 유니세프한국위원회-서울시교육청 공동 프로젝트 추진 「마음건강 교육자료 ‘멋쟁이 메이와 친구들’」 개발·보급 **신규**
  - 목적: 청소년의 심리 사회적 행복을 증진, 마음건강 문제 예방, 위험행동을 줄일 수 있는 학습 및 기술 형성 지원
  - 구성: (만화형식)스토리북, 학생용 워크북, 교사 및 보호자 가이드

- 일정: 교재 제작 완료(6월)→ 시범학교 적용(7~9월)→ 전체 학교에 보급(10월)
-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개발 **신규**
  - 지역사회 접근법(스웨덴 SMART 프로그램 적용)을 통한 심리정서 지원
 

▷ 1차 : 관심군 학생 대상 **스쿨링크**를 통한 지역사회 전문서비스 연계  
 ※ 스쿨링크(School Link) : 사례관리팀(전문상담교사, 보건교사, 사회복지사, 생활부장교사, 담임교사 등) 중심으로 관심군 학생의 정보 공유 및 지역 전문 자원과의 연계를 통한 학생 관리

▷ 2차: 전체 학생대상 지역사회 **멤버십카드** 활용을 통한 지역사회 서비스 연계  
 ※ 보호자와 함께 참여계약서 작성 → 멤버십카드 발행 → 지자체 제공 공공시설 이용
  - 일정: 시범학교 선정(6월)→ 운영(8~11월)→ 운영결과 분석·개선 방안 논의(12월)
- (체험중심) 마음건강 회복 및 치유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계속**
  - 마음건강 위기학생(자살시도 등 포함) 학급 대상(초 5~6, 중, 고)
- 유튜브 플랫폼 탑재용 생명존중 동영상 개발·보급 **신규**
  - 청소년 친화적인 매체를 활용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

### 세부사업 3 심리정서 고위기학생을 위한 마음건강 집중 지원

- 학생들의 정서·행동(우울, 자살 등) 조기 발견 및 악화 방지를 위한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 결과에 따른 후속 연계 지속적 확대 **계속**
  - 지역사회 정신건강 전문기관과 협업하여 관심군 학생 연계 및 관리 강화
    - ※ 「지역 정신건강증진 협의체」(Wee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 병원 등) 구성 및 운영 활성화
  - 최근 3개년 검사 결과 및 2차 연계 현황

연도	학교수	검사인원(명)			검사결과		2차 조치 결과	
		검사대상 (A)	검사실시 (B)	참여율 (B/A)*100	관심군	자살위험	관심군	자살위험
2020	1,318교	282,785명	280,759명	99.3%	12,382명 (4.4%)	3,075명 (1.1%)	8,413명 (67.9%)	2,248명 (73.1%)
2021	1,320교	268,930명	266,823명	99.2%	12,117명 (4.5%)	3,310명 (1.2%)	9,119명 (75.3%)	2,572명 (77.7%)
2022	1,318교	267,074명	264,614명	99.1%	12,839명 (4.9%)	3,428명 (1.3%)	9,500명 (74.0%)	2,632명 (76.8%)

- 최근 3개년 전문기관별 2차 연계 현황

(단위: 명)

구분	관심군	2차 연계							미연계
		Wee 센터	정신건강 센터	청소년 상담센터	병의원	onestop 마음건강 지원센터	기타*	소계	
2020년	12,382	1688	903	1482	1035	132	3173	8,413	3,969
2021년	12,117	1,454	1,013	1,635	1,422	178	3,417	9,119	2,998
2022년	12,839	1,734	952	1,525	1,813	137	3,339	9,500	3,339

※ 기타 : 외부 전문가의 학교 방문(학교 자체 예산으로 전문가 초빙, 교육부 사업), 기타 상담센터 방문 등

○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 운영 계속

- 학사일정, 학부모 관심부족 등으로 학생 정서·행동특성검사 2차 연계에 어려움이 있는 미연계된 관심군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지원

- ▶ 맞춤형 상담서비스 제공(전문상담사 개인상담(내방, 출장), 전화상담 등)
- ▶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전문상담요원 인력풀 파견: 1인당 8회기 이내 상담)
- ▶ 소아청소년정신과 전문의의 상담 및 컨설팅 서비스(부모교육 및 치료방향 설정 자문 등)

구분	맞춤형 상담서비스	찾아가는 마음건강 상담	전문의 상담 및 컨설팅
2022	187명/818회기	137명/888회기	41명/41회기
2023.6.30.	73명/137회기	99명/379회기	18명/18회기

○ 학교로 찾아가는 정신건강전문가(거점병원 연계) 사업 계속

- 심각한 심리정서적 문제로 학교 적응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을 주요 대상으로 거점병원에 의뢰하여 심층 평가 및 상담, 상담 거부 보호자 교육 지원

권역명	담당 전문기관명	연계병의원수	해당 교육청
1권역	고려대학교구로병원	5	강서양천, 남부, 동작관악(관악구)
2권역	강남세브란스병원	16	강남서초, 강동송파, 동작관악(동작구)
3권역	은평성모병원	14	서부, 성북강북, 성동광진(광진구) 중부(용산구)중구
4권역	서울의료원	11	동부, 성동광진(성동구), 북부, 중부(종로구)

- 정신건강전문가 의뢰 학생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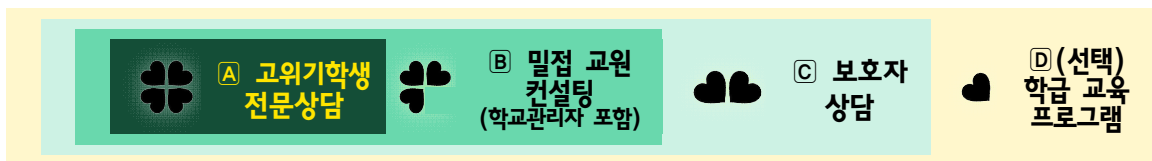
(단위: 명)

구분	2021	2022	2023(6.30.기준)	비고
의뢰학생수	170	227	123	

- 정신건강 위기학생 심리치료비 지원 **[강화]**
  - 자살(자해)시도 및 고위험군 학생 치료비 지원(정신과, 신체상해 치료비 각 300만원)
    - ※ '22년 지원 현황 : 224명 / 242,611,880원
  - 마음건강전문가 추천 학생 치료비 지원(1인당 200만원 이내)
    - ※ '22년 지원 현황 : 103명 / 68,808,186원
- ADHD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안내서 보급 및 교원 연수 추진 **[신규]**
  - ADHD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용 안내서 개발 및 보급 완료(23. 3월)
  - ADHD 학생 지도를 위한 교사 역량강화 연수(특강) 및 컨설팅(사례 회의)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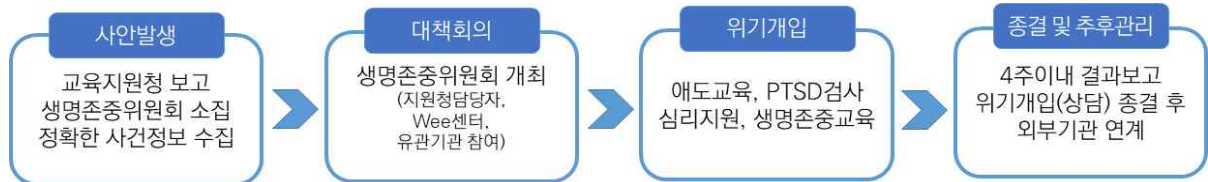
**세부사업 4 학생 심리정서 위기 개입 시스템 강화**

- (본청) 마음건강 전문가의 위기학생 통합지원 솔루션, ‘찾아가는 위기 지원단’ 운영 **[신규]**
  - 학생자살 사망, 심각한 자살시도 사안 발생교 대상으로 위기개입, 학교요청 시 자살징후 등 고위기학생에 대해 찾아가는 맞춤형 상담 및 치료 지원: 추경 44백만원 편성



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지원단	찾아가는 사례관리 지원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심리정서 고위기 학생에 대한 상담치료 지원</li> <li>○ 위기학생을 중심으로 교사, 학교관리자, 보호자에 대한 상담, 컨설팅 지원</li> <li>○ 위기학생 소속 학급 대상 생명존중 교육 프로그램(대면) 지원</li> <li>○ 필요 시 병원 연계 등 위클래스에 자문 제공</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경력, 중대사안 등 위기상황을 겪는 전문상담(교)사를 대상으로 사례관리 운영을 통해 위기 대처 역량 강화 및 수련 기회 지원</li> <li>○ 전문상담(교)사 네트워크 활성화</li> </ul>

- (지원청) ‘위기학생상담지원단’ 운영의 내실화 **계속**
  - [학생] 마음건강 위기학생(자살시도 등) 상담 및 치료지원, [교직원 및 보호자] 학생 중대사안(자살, 자살시도)에 따른 트라우마 극복 지원(상담 등): 추경 62백만원 편성
- 중대사안 발생 시 보고 및 위기개입 시스템 강화 **계속**



연차별 추진목표

세부사업	최종목표	2022.7.~12.	2023	2024	2025	2026.1.~6.
정서심리 결손, 사회성 약화에 따른 진단·상담·처방 강화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에 따른 2차 연계 80% 이상	연계율 76%	연계율 77%	연계율 78%	연계율 79%	연계율 80% 이상
찾아가는 학생 마음건강지원단 운영으로 위기학생 지원	자살·자해 등 위기학생 증가에 따른 선제적 학생자살예방	-	자살시도 등 심리정서 고위기학생 위기지원 360회	자살시도 등 심리정서 고위기학생 위기지원 400회	자살시도 등 심리정서 고위기학생 위기지원 450회	자살시도 등 심리정서 고위기학생 위기지원 500회
상담·진단·치료를 위한 지역별 거점병원 연계 및 지원 확대	거점병원 6개	4개 거점병원	4개 거점병원	5개 거점병원	5개 거점병원	6개 거점병원

---

##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



## 업무 평가 및 개선 방향

### □ 성과

- 심리정서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다각도 노력
  - 위클래스 상담활동 강화를 위한 운영비 및 구축·리모델링비 증액 지원
  - 위센터 메타버스 심리상담 전면 시행 및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 ☞ 학생에게 친숙한 매체로 상담 접근성을 높여 위기학생 적시지원
  - Wee 자문단 운영을 통한 단위학교 교직원의 위기학생 지원 역량 제고
    - ※ 학교 수요조사, 자문단 회의를 통한 주제 선정, 매월 1회 유튜브 생중계 연수
  - 학생 마음건강 지원단 운영으로 위기학생 심리회복 지원 도모
    - ※ (교육지원청)위기학생상담지원단 운영, (본청)네잎클로버를 찾아가는 위기지원단 운영
  - 위기학생 지원 강화를 위한 수요자 맞춤형 상담·치유활동 확대
    - ※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마음건강One-Stop지원센터 운영, 치료비 증액 등
- 지역사회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 강화
  - Wee-Network(청소년상담복지센터·정신건강복지센터·가족센터) 회의 운영
  - 지역공동체 기반 학생 우울자살예방 및 사회성 강화 프로그램 시범학교(3교) 선정

### □ 한계

- 전문상담(교)사 정원 확보 어려움에 따른 미배치교의 고충 발생
  - 코로나19이후 대면수업 재개로 단위학교 심리정서 위기학생 급증
- 일반 심리상담이 아닌 전문 상담 및 치료 지원이 필요한 학생 증가
  - 전문상담(교)사의 상담·치유 지원을 넘어 정신건강전문가의 개입 필요

### □ 개선 방향

- 비대면 상담 강화와 유관기관 협업으로 상담접근성 제고 및 수요 충족
- 학생마음건강 전문가 학교방문 사업 확대를 통한 학생 지원 내실화

---

## [참고] 관계 법령

---



[시행 2020. 3. 2.] [교육부훈령 제329호, 2020. 3. 2., 일부개정.]

교육부(학교생활문화과), 044-203-6973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 제3항 제2호 및 제4항에 따른 지원 사업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위(Wee) 프로젝트 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이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에 따른 학생에 대하여 종합적인 진단·상담·치유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2. "사업기관"이란 교육감 등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3. "위(Wee) 클래스"란 학교단위에 설치한 학교상담실을 말한다.
4. "위(Wee) 센터"란 교육지원청 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단위에 설치한 학생상담지원시설을 말한다.
5. "위(Wee) 스쿨"이란 시·도교육청 단위에 설치한 위탁교육시설을 말한다.
6. "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이하 "전문상담사 등"이라 한다)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기관의 장이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 중에서 근무계약을 맺은 사람을 말한다.

**제3조(사업기관의 지정 및 지원 등)** ① 교육감은 소속 기관 또는 외부 민간기관을 사업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지역 여건과 사업기관의 규모·특성 등을 고려하여 설치 지역, 사업관할 범위 등을 조정할 수 있다.  
 ② 사업기관의 장은 교육감이 정한 바에 따라 해당 학년도의 사업계획 등을 수립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고, 교육감은 사업기관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예산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은 국립학교에 대한 사업의 운영·지원 등을 해당 학교 소재지 교육감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4조(위 클래스)** ① 위(Wee) 클래스가 설치된 학교의 장이 위(Wee) 클래스의 장이 된다.

- ② 위(Wee) 클래스의 장은 학교 내 부적응 학생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지원 등을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클래스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적응 학생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학부모 및 교사에 대한 상담, 자문, 교육지원
  4. 학교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5.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상담 지원
  6. 그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위(Wee) 클래스는 학교 내 부적응 학생 등에 대한 상담을 일차적으로 담당하며, 상담 내용 및 위기 수준에 따라 위(Wee) 센터, 위(Wee) 스쿨, 전문 상담기관 등에 학생을 의뢰할 수 있다.  
 ④ 위(Wee) 클래스의 장은 제2항 및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 등은 '전문상담사' 등을 일괄 채용하여 위(Wee) 클래스에 배치할 수 있다.

**제5조(위 센터)** ① 위(Wee) 센터가 설치된 교육감 또는 교육지원청의 장은 상담전문기관 등에 위(Wee) 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고, 교육감, 교육지원청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해당 위(Wee) 센터의 장이 된다.

- ②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3조제1항에 따라 교육감은 시·도 교육청 또는 직속기관에 위 센터를 설치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위(Wee) 센터의 장은 당해 교육감 또는 직속기관의 장이 된다.

③ 위(Wee) 센터의 장은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 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2. 학교폭력 가·피해 학생 등 위기학생에 대한 진단·상담·치유 등을 위해 필요한 사업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 제5항에 의한 학업중단숙려제 지원
4. 상담 내용 및 위기수준에 따라 보호자와 협의하여 위기학생 치유 등을 타 전문기관에 의뢰하는 사항
5. 사업 종사자 연수, 컨설팅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6. 시·도교육청, 교육지원청 내·외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7. 학교보건법 제11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후속 상담지원
8. 그 밖에 학생 진단, 상담, 치유 및 교육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위(Wee) 센터의 장은 제3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6조(위 스쿨)** ① 교육감이 지정하는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수탁기관의 장이 위(Wee) 스쿨의 장이 된다.

② 위(Wee) 스쿨의 장은 학생의 학교복귀 및 치유 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한다.

1. 위(Wee) 스쿨 운영에 관한 사항
2.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4조제2항에 따라 학교로부터 위탁받은 학생 등의 교육을 위해 필요한 계획 수립·시행, 통계관리, 평가 및 개선
3. 지역사회 상담자원 및 유관 기관과의 연계·협력 활성화
4. 그 밖에 학생 상담, 교육,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위(Wee) 스쿨의 장은 제2항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전문상담사 등을 채용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연수 및 자문)** ① 교육감은 사업종사자의 전문성 향상에 필요한 연수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사업에 필요한 정보나 자문을 제11조의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시·도의 사업기관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8조(위 프로젝트 위원회 설치)** 교육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시·도교육청에 ‘위(Wee) 프로젝트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시·도교육청 사업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2. 위(Wee) 클래스, 위(Wee) 센터 및 위(Wee) 스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사업 종사자 연수 등 전문성 신장에 관한 사항
4. 지역사회 연계, 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5. 시·도교육청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확보 및 경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해당 시·도교육청의 사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9조(위 프로젝트 위원회 구성)** ① 위(Wee) 프로젝트 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해당 시·도 교육청 소속 사업 관련 공무원
2. 사업기관의 장 등 사업종사자
3. 지방자치단체 소속 사업 관련 공무원
4. 지역 복지기관, 교육기관, 봉사기관 등 관련 단체 관계자
5. 학부모, 변호사 등 지역사회 인사
6. 그 밖에 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무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0조(수당 등)** 교육감은 위 프로젝트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여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 ① 장관은 사업의 관리, 컨설팅, 평가 등 관련 업무를 전담·수행하는 ‘위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고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은 사업 관련 자료와 통계의 수집·관리·분석, 관리시스템 운영, 정책 연구 및 정책자문,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연수, 기타 장관 또는 교육감이 위탁하는 사업 등을 수행한다.

③ 장관과 교육감은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의 위탁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정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12조(상담기록관리시스템)** ① 사업기관의 장은 상담처리의 내용과 과정, 통계수치 등을 상담기록관리시스템(이하 ‘관리시스템’이라고 한다)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장관은 관리시스템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Wee) 프로젝트 지원 전담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연계·협력 및 협의체 구성)** ① 교육감은 사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상담·복지기관 등과 연계·협력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사업기관은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14조(사업운영의 점검 및 성과관리)** ① 교육감은 사업 운영을 점검하고 성과를 관리하기 위하여 평가기준 등을 수립하여 사업기관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사업운영 점검 및 성과, 평가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1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329호, 2020. 3. 2.>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 2023. 5. 18.] [서울특별시조례 제8686호, 2023. 5. 18., 타법개정]

서울특별시교육청(민주시민생활교육과), 02-3999-061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에 따라 학생 발달단계에 맞는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학생의 건전한 성장을 도모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생”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이란 자살의 위해성을 알리고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워서, 성장하는 학생에게 육체적·정신적 건강의 보호·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교육활동을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환경조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교육감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을 학교교육과정으로 편성·운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③ 교육감은 자살징후 조기발견, 고위험군 학생에 대한 지역사회 전문기관과의 연계·치료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학생자살 예방계획 등)** ① 교육감은 매년 학생자살 예방계획(이하 “예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한다.

② 예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학생자살 현황 분석
2.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대책
3. 학생 자살예방을 위한 위기관리 체계 구축
4. 유관기관과의 연계체제 구축
5.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신설 2022. 7. 7.>
6.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교육감은 매년 예방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예방계획에 반영한다.

**제5조(생명존중위원회의 설치)**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문화 조성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시행의 효율적 지원을 위해 생명존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교육감에게 자문한다.

1. 제4조의 예방계획 수립·시행
2.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에 관한 교육의 운영 성과와 과제
3.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4. 학생 자살예방교육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정신건강 증진 지원사업의 추진과 평가<신설 2022. 7. 7.>
5.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외부전문가로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효율적인 자살예방교육과 생명존중교육을 위해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제7조(학생 자살예방기관의 지정·운영)** 교육감은 학생자살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생 자살예방기관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8조(학생자살예방 담당 교사 교육)** ① 교육감은 학생 자살예방교육 담당 교사의 역량강화를 위한 연수 등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자살예방 교육담당 교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9조(가족 등에 대한 지원)** ① 학교장은 자살학생·자살미수학생 및 이들의 가족 등에게 미치는 영향이 완화된도록 본인과 가족 등에 대하여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학교장은 학생 자살예방 대책을 실시함에 있어서 자살학생·자살미수학생과 이들의 가족 등에게 생활의 평온이 유지되도록 배려해야 한다.

**제10조(예산의 지원)** (정신건강 증진 지원) 교육감은 학생자살을 예방하고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상시적인 정신건강 상태의 측정 및 검사
2. 정신건강 상담 및 치료
3. 정신건강 관련 교육 및 홍보
4. 그 밖에 교육감이 청소년 정신건강 관리와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본조 전부 개정 2022. 7. 7.>

**제11조(비밀준수의 의무)** 학생 자살예방 및 보호업무를 담당하였거나 담당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8686호, 2023.5.18.>(서울특별시 교육·학예에 관한 조례의 위원회 관련 규정 일괄정비를 위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임에 관한 일반적 적용례)**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선임에 관한 개정 규정은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가 각각 만료된 이후부터 적용한다.

**제3조(위원회 또는 협의회의 위원 구성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등)** ① 이 조례 시행 이후 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당시 개정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연임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개정 규정의 요건이 충족될 때까지는 외부전문가를 위촉하여야 한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에 임명되거나 위촉된 위원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에 따른 위원회(협의회)의 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것으로 본다.

[시행 2022. 6. 29.] [법률 제18640호, 2021. 12. 28., 일부개정]

교육부(학생건강정책과-보건분야) 044-203-6547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2. 3. 21., 2016. 2. 3., 2020. 10. 20.>

1. “건강검사”란 신체의 발달상황 및 능력, 정신건강 상태, 생활습관, 질병의 유무 등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2. “학교”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 학교를 말한다.
3. “관할청”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지도·감독기관을 말한다.
  - 가. 「유아교육법」 제7조제1호에 따른 국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1호에 따른 국립학교: 교육부장관
  - 나. 「유아교육법」 제7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유치원·사립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3조제2호·제3호에 따른 공립학교·사립학교: 교육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교육부장관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건강검사 등)** ① 학교의 장은 학생과 교직원에 대하여 건강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교직원에 대한 건강검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으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31.>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할 때에 질병의 유무 등을 조사하거나 검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생에 대하여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에 따른 건강검진 실시 기관에 의뢰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한 건강검사를 한다. <개정 2008. 2. 29., 2011. 12. 31., 2012. 3. 21., 2013. 3. 23.>

1.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1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및 4학년 학생. 다만, 구강검진은 전 학년에 대하여 실시하되, 그 방법과 비용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한다.
  2.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제3호의 학교와 이에 준하는 특수학교·각종학교의 1학년 학생
  3. 그 밖에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학생
- ③ 학교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 외에 학생의 건강을 보호·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학생을 별도로 검사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④ 학교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관할 교육감 또는 교육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사를 연기하거나 건강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생략할 수 있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⑤ 제2항에 따라 건강검사를 한 검진기관은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검사결과를 해당 학생 또는 학부모와 해당 학교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3. 3. 23.>
- ⑥ 학교의 장은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 검사를 실시할 때 필요한 경우에는 학부모의 동의 없이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지체 없이 해당 학부모에게 검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신설 2012. 3. 21., 2016. 3. 2., 2021. 3. 23.>
- ⑦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건강검사의 시기, 방법, 검사항목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 2. 29., 2012. 3. 21., 2013. 3. 23.>

[전문개정 2007. 12. 14.]

**제7조의2(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 ① 교육감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지역의 여건 및 특색을 고려하여 학생의 신체 및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학생건강증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4.>

②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1조에 따른 학교의 장의 조치를 행정적 또는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③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생건강증진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건강검사의 결과를 평가하고, 학생정신건강증진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제15조제1항에 따른 학교의사 또는 학교약사에게 자문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21. 9. 24.]

**제9조(학생의 보건관리)** 학교의 장은 학생의 신체발달 및 체력증진, 질병의 치료와 예방, 음주·흡연과 마약류를 포함한 약물 오용(誤用)·남용(濫用)의 예방, 성교육, 이동통신단말장치 등 전자기기의 과의존 예방, 도박 중독의 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 등을 위하여 보건교육을 실시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3. 21., 2012. 1. 26., 2019. 12. 10., 2021. 12. 28.>

[전문개정 2007. 12. 14.]

**제11조(치료 및 예방조치 등)** ① 학교의 장은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의 결과 질병에 감염되었거나 감염될 우려가 있는 학생에 대하여 질병의 치료 및 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학생에 대하여 제2조제1호의 정신건강 상태를 검사한 결과 필요하면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2. 30.>

1. 학생·학부모·교직원에 대한 정신건강 증진 및 이해 교육
2. 해당 학생에 대한 상담 및 관리
3. 해당 학생에 대한 전문상담기관 또는 의료기관 연계
4. 그 밖에 학생 정신건강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③ 교육감은 검사비, 치료비 등 제2항 각 호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13. 12. 30.>

④ 학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의 조치를 위하여 필요하면 보건소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보건소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개정 2013. 12. 30.>

[전문개정 2007. 12. 14.]

[제목개정 2013. 12. 30.]

**제18조의2(비밀누설금지 등)** 이 법에 따라 교직원 및 학생에 대한 건강검사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거나 수행하였던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1. 3. 23.>

[본조신설 2013. 12. 30.]

**제19조(벌칙)** ① 제18조의2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13. 12. 30., 2021. 3. 23.>

② 삭제 <2016. 2. 3.>

[전문개정 2007. 12. 14.]

**부칙** <제18640호, 2021. 12. 28.>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